

[일련번호 : 2]

양 천 구 시 정 요 구

제 목 위험근무수당 직무 내용 상이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■■■■■■ ■■■과
내 용

1. 업무개요

■■■과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」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[별표 7]의 지급 구분 및 [별표 8]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295호, 2024.8.29.) V. 특수근무수당 1.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) 직무의 위험성, 2) 상시 종사 여부, 3)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“직무의 위험성”은 영 [별표 8]의 각 부문과 등급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고, “상시 종사”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·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, “직접 종사”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■■■과 ○○○는 2024.1.1.부터 2025.1.30. 기간 동안 ‘장내 세균검사 및 결핵균 도말검사 업무’를 수행하면서 ‘방역·보건 및 수의부문’ 병종 (가) ‘결핵·한센병·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’으로 2024. 1월부터 2024. 10월, 10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(병종)월 4만원씩 400,000원을 수령하였다.

하지만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‘방역·보건 및 수의부문’ 을종 (나) ‘결핵·한센병·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·치료·검사·간호·물리치료·작업치료·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’에 해당하여 지급액이 (을종)월 5만원으로 월 1만원씩 2024. 1월부터 2024. 10월, 10개월 간 100,000원을 과소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■■■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■■■과장은

과소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100,000원을 추가지급받고(재무과 협의), 향후 위험근무수당 신청 시 직무와 맞는 등급과 부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